

『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미시 가족행복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 친화도시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치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7조)
 - 이용시간, 이용자, 이용제한, 변상 및 원상회복 등
-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위·수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 -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 및 회계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의 개관이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,
- 시설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추진사업과 이용기준을 명확히 하며,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가족친화적 도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합 가족지원센터로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-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